

#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4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년 1월 일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도입, 기본·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을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**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 제4조제3항)**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「임용자격기준」 명시
    - \* [별표 1]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
- **지방별정직 임용시 '공고생략'근거 마련 신설 (안 제5조제2항)**
  -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
  -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(예, 초빙하는 경우 )
- **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 신설(안 제8조의2)**
  -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·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교육 이수기회 부여
- **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**
  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(근무성적평정) 규정 준용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,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
- **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신설(안 제12조의2)**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기타참고 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0. 10. 18 ~ 11. 8. (21일간)

다. 2010년도 제12회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가결

라. 기타 :

5. 관계법령 : 불임

참 부 1. 의안전문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3. 관련법령 1부.

4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”을 “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비서관 및 비서

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 : 초빙하는 경우)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 (교육훈련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

제12조 중 “반영할 수 있다.”를 “반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상당계급	임용자격
3급상당 이상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4급상당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5급상당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6급상당	1.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
상당계급	임용 자격
7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</li> <li>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8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9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<p>※ 비 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정직 5급상당 파장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(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에는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, 비서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</li> </ul>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임용자격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임용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</u> -----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.</u></p>
<p>제5조(임용절차 등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 (임용절차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<u>비서관 및 비서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<u>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 : 초빙하는 경우)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8조의2 (교육훈련) ① <u>시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</u>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</p> <p>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</p>

## [관계법령]

###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·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기능직공무원: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 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 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
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- 함께하는 충북 -

# 충청북도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## 제목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통보

1.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- 3027(2010.10.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, 기본·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선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를 불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

3. 총무과 및 시 군에서는 동 조례안을 도 및 시·군 조례에 반영(개정)하시기 바랍니다.

- 첨 부 1.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개정계획(요지) 1부.  
2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1부. 끝.

## 충청북도지사

수신자 총무과장, 청주시장(자치행정과장), 충주시장(총무과장), 제천시장(자치행정과장), 청원군수(행정과장), 보은군수(행정과장), 옥천군수(자치행정과장), 영동군수(자치행정과장), 증평군수(행정과장), 진천군수(행정과장), 괴산군수(행정과장), 음성군수(행정과장), 단양군수(자치행정과장)

주우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

협조자

시행 자치행정과-11777 ( 2010.10.08. ) 접수 자치행정과-15560 ( 2010.10.09. )

우 36076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(문화동) 충북도청 자치행정과 /http://www.cb21.net/

전화 220-2615 /전송 043)220-2639 / cjpark3@korea.kr / 공개

##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개정 주요내용

### □ 개정배경

-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('09.12.17)의 후속조치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
-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
  - 임용자격기준,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, 시간제 근무 도입 등

### □ 주요 개정내용

-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 제4조제3항)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「임용자격기준」 명시
    - \* [별표 1]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
- 지방별정직 임용시 '공고생략'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
  -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
  -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(예, 초빙하는 경우)
-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(안 제8조의2)
  -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·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교육 이수기회 부여
-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
  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(근무성적평정) 규정 준용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,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
-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(안 제12조의2)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

##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·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“별정직 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<개정 1999.11.16>

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

**제3조 (임용권자)** ①시장(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은(는)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(\*조례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(\*사무국장, 사무과장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1.16>

**제4조 (임용자격)**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7. 1>

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10. 7. 1>

**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**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**제5조 (임용절차 등)**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비서관 및 비서

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 : 초빙하는 경우)

[본조신설 2010. 7. 1]

제6조 (신규임용 최저연령)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 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. <개정 1999.11.16>

제8조 (근무상한연령)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9.11.16>

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③ 및 ④ 삭제 <1998.10.10>

제8조의2 (교육훈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

[분조신설 2010. 7. 1]

제9조 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제10조 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○○광역시(특별시·도·시·군·자치구)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4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**제11조의2 삭제 <2009. 2. 24>**

**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**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**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**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>

**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**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,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제2조에 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,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 7. 1]

**제13조 (징계)**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14조 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**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 (시행규정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이(가)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0. 7. 1>

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상당계급	임용 자격
3급상당 이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4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5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6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</li> <li>5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
상당계급	임용 자격
7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</li> <li>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8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9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<p><b>※ 비 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(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에는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, 비서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</li> </ul>	

제천시 공고 제 2010 - 1137

「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0. 10. 18.

제 천 시 장

##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도입, 기보·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을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 제4조제3항)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「임용자격기준」 명시
  - \* [별표 1]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
- 지방별정직 임용시 '공고생략'근거 마련 신설 (안 제5조제2항)
  -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
  -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(예, 초빙하는 경우 )
-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 신설(안 제8조의2)

-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·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교육 이수기회 부여

○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(근무성적평정) 규정 준용, 근무성적평정 의 결과를 성과상여금,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

○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신설(안 제12조의2)

-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8일 까지 제천시청 (참조 자치행정과 인사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803, FAX 641 - 5469 담당자 : 최병순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실무관	인사팀장	자치행정과장			
최 병 순	이 형 민	함 건택			

##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『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』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조 례 명 :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2. 공고번호 : 제천시 공고 제2010-1137호
3. 공고기간 : 2010. 10. 18 ~ 2010. 11. 8(21일)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결과 :
  - 조회수 : 83회
  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 임 : 입법예고 공고문안 1부. 끝..